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행령에 규정된 공사 녹색경영 등 지원 업무의 법률 상향〉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88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시행령에 규정된 공사 녹색경영 등 지원 업무의 법률 상황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4. 14.
3. 회 부 일 : 2025.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2027년부터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 등 선박·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세부업무의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시행령에 규정된 공사 녹색경영 등 지원 업무의 법률 상향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녹색경영’ 및 ‘외국 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제11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나.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11조(업무) ①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신설>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0.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자산관리(취득·관리·처분), 해운항만사업자의 자산확보를 위한 자금 차입 보증 등의 채무보증 등 해운항만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¹⁾

<참고 1, 공사 주요 업무>

동법 시행령에서 녹색경영(온실가스 배출 등 최소화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 실천 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2의3.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그 수탁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6.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제7조(업무) ③ 법 제1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 (생략)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4.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u>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u>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Net-Zero”로 만들기 위한 중기조치²⁾ 규제안을 승인('25.4월 합의)하였고, 이 규제에 따라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운항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됨. 해양수산부는 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대응을 위하여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금융 투자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5.4.11.(금)>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이하 “위원회”)에서 승인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 규제안에 따르면,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됨.

- 참고로,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 관련 해양수산부 추산(「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23.2)」)에 따르면, IMO 대상이 되는 선박은 1,162척의 외항선 중 867척이고, 이 중 기존 노후 선박(선령 25년)을 친환경 선박으로 순차적으로 대체³⁾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70조 5,557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임.

[전환대상 선박]

합계(척)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유류/케미컬선	자동차선	원유 운반선	광석 운반선	LPG 운반선	석탄·철강선
867	174	299	176	61	72	46	29	10

※ IMO규제(CII)·EU배출권거래제가 미적용되는 5천톤 미만 선박 및 LNG 운반선 제외
 ※ 해양수산부

□ 이에 개정안은 국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적선사의 선박금융 수요 규모가 대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해운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녹색경영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 지원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공사의 관련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현행법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개정안과 같이 2027년부터 본격화될 해운업계의 탄소 중립 흐름에 대비해, 공사

3) (해양수산부) 기존선박 선령 25년 도달 시, 신조선을 발주하고 그로부터 3년 후 대체 가정(30년까지 118척, '40년까지 606척, '50년까지 867척)

가 국적 해운선사에 대해 친환경 금융 투자와 경영지원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어 친환경 해운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녹색경영 등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친환경 해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개정안에서 녹색경영과 관련해 인용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향후 개정되는 경우 본 법률도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의 친환경 규제 강화에 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할 경우, 친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9

참고 1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요 업무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지원실적(~24)
금융 지원 (투자, 보증, 보조 등)	고효율 선박 확보	선박도입 투자*	국적선사의 신조 및 중고선 신규 도입 지원	25개사 (27,670억원)
		선박도입 보증*	국적선사의 신조 및 중고선박 도입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15개사 (26,249억원)
		국가필수 선대제도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에 따른 한국인 선원의 임금 증가분 보상 (* 정부위탁)	16개사 (300억원)
	안정적 화물확보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선사 및 항만사업자 등의 국내외 터미널, 물류시설 등 항만물류 인프라 취득에 필요한 자금 지원	11개사 (7,759억원)
	경영 안정 지원	보유선박 투자	국내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공사가 매입한 후 선사에 임대 (Sale&Lease Back)	37개사 (21,237억원)
		보유선박 보증	국내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재금융 시 공사가 채무보증	2개사 (1,105억원)
		P-CBO	신용보증기금의 P-CBO 프로그램에 해운항만기업 편입 시 일정 비율의 후순위 채권 인수	13개사 (4,400억원)
		회사채 인수	경영 위기를 겪는 국적선사에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선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인수	18개사 (18,801억원)
		컨박스 사업	컨테이너 박스 확보 시 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가 발주해 합리적인 요율로 리스	6개사 (6,682억원)
		대출이자 지원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7개)에서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감면	63개사 (3,360억원)
		신용보증 지원	국내 연안여객 운송사업자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제공	7개사 (84억원)
	친환경 전환 가속화	친환경 설비 개량	해수부의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하여 특별보증을 제공하여 소요자금 지원	49개사 (5,717억원)
		글로벌 저탄소 대응 지원	친환경 선박 도입 시 보조금(선가의 최대 10%) 지원 (* 정부위탁, 舊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21개사 (1,218억원)
		위기대응펀드	구조조정 성과(배당금 등)를 활용하여 해운산업 구조조정 및 ESG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23.6~)	3개사 (1,000억원)
금융 외 지원	해운정보 서비스 제공		해운시장 리서치를 통한 시황보고서 발간, 해운정보망 운영, 해상운임지수 개발·운영 등	2,174건
	선박가치평가 사업		선박가치평가서 발급 및 선가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선박가치평가 국내화를 통해 선사 비용부담 완화	73개사 (683건)
	해운산업진단 및 컨설팅		국적선사 선박금융, 영업실적, 금융조건 등을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선사에 종합 컨설팅 제공	92건
	해양 금융 전문인력 양성		해운·금융기관 종사자 대상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실시	221명 (수료생 기준)
	수출입물류 플랫폼 운영		공공과 민간의 수출입 물류 데이터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여 물류 효율성 증대 도모 (* 정부위탁)	13개사

* '선박도입투자'에 친환경 신조 지원 펀드(정책금융기관 공동), 공공선주사업 포함

** 중소선사의 선박 도입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방식(투자/보증)에 따라 선박도입지원 또는 선박도입보증에 포함